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성별 고용현황 공시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35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 목 차

|                               |   |
|-------------------------------|---|
| I . 제안경 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성별 고용현황 공시(안 제6조제1항) ..... | 2 |

## I. 제안경위

2025년 7월 11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 65.0%(2022), 65.3%(2023)이며(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 6).

### Ⅲ. 검토의견

#### 1. 성별 고용현황 공시(안 제6조제1항)

#####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현행법 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현황 공시에 ①직종·직무·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직원 인원 및 성비 현황, ②직종·직무·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남녀 임직원 보수 현황, ③성별 승진 관련 현황, ④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의6(고용형태 <u>현황</u>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u>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u> 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의6(고용형태 <u>등에 관한 현황</u> 공시) ① -----<br>-----<br>-----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u> -----. |
| <신 설>                                                                                          | 1. 직종·직무·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직원 인원 및 성비 현황                                                                 |
| <신 설>                                                                                          | 2. 직종·직무·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남녀 임직원 보수 현황                                                                   |
| <신 설>                                                                                          | 3. 성별 승진 관련 현황(성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포함한다)                                                                          |
| <신 설>                                                                                          | 4.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

|                                                          |                                                                                                       |
|----------------------------------------------------------|-------------------------------------------------------------------------------------------------------|
| <p>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u>성별 근속 현황</u></p> <p>② -----<u>고용형태 등에 관한 현황</u>-----<br/>-----.</p>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5조의6은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①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 ②공시의무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 수(파견, 하도급, 용역 등) 및 ③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sup>1)2)</sup>

-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6(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 ② (생략)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고용형태 공시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상시 1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형태 현황을 사업장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형태 현황과 함께 공시해야 한다.
1.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등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이하 “고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은 최근 3년(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3년 미만인 사업주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의 공시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③ (생략)

## < 고용형태 공시제도 개요 >

- 공시대상: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법인)\*\*
  -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합계 / 조업개월 수
  - \*\* 장소와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법인단위로 공시)
- 공시방법: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www.work.go.kr/gongsi](http://www.work.go.kr/gongsi))
- 공시시점: 매년 3. 31. 기준 현황을 4. 30. 까지 입력
- 공시내용
  - ①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
  - ②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소속 외 근로자 수(과건, 하도급, 용역 등)
  - ③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 내용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고용형태의 안정을 지향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업주로 하여금 기업 간 비교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임.

---

2) 구체적인 공시내용에 관한 사항은 【참고】 고용형태 현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참조

### <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

(단위 : 천명, %)

| 연도<br>(공시기업)     | 전체 근로자(소속+소속 외)  |                    |              |                 |             |                 |               |                 |
|------------------|------------------|--------------------|--------------|-----------------|-------------|-----------------|---------------|-----------------|
|                  |                  | 소속 근로자(기간정함없음+기간제) |              |                 |             |                 |               | 소속 외<br>근로자     |
|                  |                  |                    | 기간정함없음       |                 | 기간제         |                 |               |                 |
|                  |                  |                    | 단시간(계)       |                 | 단시간         |                 | 단시간           |                 |
| 2024<br>(4,057개) | 5,759<br>(100.0) | 4,743<br>(82.4)    | 368<br>(7.8) | 3,463<br>(73.0) | 74<br>(2.1) | 1,279<br>(27.0) | 294<br>(23.0) | 1,016<br>(17.6) |
| 2025<br>(4,176개) | 5,819<br>(100.0) | 4,869<br>(83.7)    | 427<br>(8.8) | 3,534<br>(72.6) | 79<br>(2.2) | 1,336<br>(27.4) | 348<br>(26.0) | 949<br>(16.3)   |

주 : (비중) ▲소속, 소속 외: 전체 대비 / ▲단시간(계), 기간정함없음, 기간제: 소속 대비

▲단시간(기간정함없음): 기간정함없음 대비, ▲단시간(기간제): 기간제 대비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2025.9.29.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수만을 공개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고용형태별·성별 처우수준 및 직무·직급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기업간 직무별 고용형태 등에 대한 비교가 어려워 자율적인 고용여건 개선 유도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202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6.4%의 임금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 대비 70.9%의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2024년 6월 기준 성별·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 >**

(단위 : 원, %)

| 구 분 |   | 전 체    |         | 정규직    |         | 비정규직          |                |
|-----|---|--------|---------|--------|---------|---------------|----------------|
| 전 체 |   | 25,156 |         | 27,703 |         | 18,404 (66.4) |                |
| 남   | 성 | 28,734 | [100.0] | 30,932 | [100.0] | 21,270        | [100.0] (68.8) |
| 여   | 성 | 20,363 | [ 70.9] | 22,670 | [ 73.3] | 15,807        | [ 74.3] (69.7) |

주 : [ ]는 남성 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4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4.29.

이에 개정안은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공시하되, 고용현황에 직종·직무·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른 고용형태별 임직원 인원과 성비, 남녀 임직원 보수 현황, 성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포함한 성별 승진 관련 현황,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각각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기업의 성별 처우수준 등의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고 임금격차 및 고용여건을 개선한다는 고용형태공시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 하에 사업주의 자율적인 자료제출을 그대로 공시하는 형태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어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의 노무 관련 핵심 정보를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

는 경우 거짓 공시로 인한 공시내용의 신뢰성 확보 문제 및 공시 참여율 저하 문제<sup>3)</sup> 등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개정안은 직종·직무·직급·근속연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고용형태별 인원과 성비, 남녀 임직원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별 사정에 따라 특정 직무, 직급, 근속연수, 고용형태 등에 해당하는 남녀 근로자가 1인 또는 소수인 경우 개인의 임금수준이 공개되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가 침해될 여지<sup>4)</sup>는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특정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1명인 사례에서의 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일반적으로 임금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sup>5)</sup>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①개정안에서 제시한 임직원 인원·성

3) 2025년 기준 고용형태 공시 참여율은 99.9%임.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5)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21410 판결

비, 성별 임금·승진 현황은 기업 내부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형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아 해당 항목을 공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고용형태 공시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과 「양성평등기본법」 7)8)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고용평등 증진을 위한 유사 제도가 마련되어 운영 중이라는 점과 성평등가족부에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라는 유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35 |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같은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한다.

8) 여성가족부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매년 공시대상회사(상장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 등) 및 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 비율, 성별 임금 현황, 근속연수 등을 발표 중임.

## 참고

### 고용형태 현황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        |  |      |  |
|-------------|-----------|--|--------|--|------|--|
| 사업체<br>(법인) | 사업체명(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  |      |  |

  

|      |             |                           |    |          |          |
|------|-------------|---------------------------|----|----------|----------|
| 공시내용 | 구분          |                           | 합계 | 남성 근로자 수 | 여성 근로자 수 |
|      | ① 소속<br>근로자 | 합계                        | 명  | 명        | 명        |
|      |             | ② 단시간근로자 수 합계<br>(④ + ⑥)  | 명  | 명        | 명        |
|      |             | ③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br>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             | ④ 단시간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             | ⑤ 기간제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             | ⑥ 단시간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 ⑦ 특기사항      |                           |    |          |          |
|      | 소속 외<br>근로자 | ⑧ 소속 외 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      |             | ⑨ 소속 외 근로자의<br>주요 업무내용    |    |          |          |